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진도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도	김 *도 1948-07-18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1-23